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50
----------	-------

발의연월일 : 2025. 10. 13.

발 의 자 : 안태준 · 이언주 · 정준호

안규백 · 소병훈 · 윤종균

권칠승 · 김정호 · 이정문

염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도로 점용료는 이를 감면받고 있으나, 철도의 역사를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의 경우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라는 공익적인 사업 목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역사 개량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의 설치 사업

과 더불어 철도 역사를 포함하는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3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호 중 “국민경제”를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시설 및 철도 시설(역사를 포함한다)의 설치 사업 등 국민경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해당 기간의 점용료를 이미 징수한 경우에는 제70조에 따라 반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u>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3. <u>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u> <u>시설, 도로 시설 및 철도 시</u> <u>설(역사를 포함한다)의 설치</u> <u>사업 등 국민경제</u> ----- ----- -----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